

남동구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

[시행 2019.11.15]
(일부개정) 2019.11.15 훈령 제368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감사실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2-453-207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「남동구 자체감사 규칙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 11. 15.)

제2조(적용범위) 이 수칙은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과 감사와 관련하여 타 부서 등에서 차출된 공무원(이하 “감사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제3조(준수의무와 책임) 제2조 규정의 대상자는 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제2장 복무자세

제4조(감사정보의 외부누설 금지 등)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5조(이권청탁행위 등 금지)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, 인·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사권한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계가족구성원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감사활동

제6조(감사준비) ① 감사반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·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실시전에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·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반장은 외부전문가를 감사활동에 활용할 때에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(특수관계인신고서 등의 제출)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수관계인신고서를 남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11. 15.)

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귀청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타 부서 등에서 차출된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감사자세)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담당공무원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감사담당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겸손한 자세와 친절한 언행으로 피감사자를 대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사상황 보고 등)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실시 사항을 일일감사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.

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토록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임의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증거자료 수집 등)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과 수감기관 직원의 출석요구 등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주요사건의 사전조치)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 중 관계직원의 신상과 관련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 또는 직속 상급자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사비용 부담금지) 감사담당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) ① 감사결과처리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민과 구 또는 국가 전체에 유익하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감사결과보고는 「남동구 자체감사 규칙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공정성·정확성 및 객관성 등이 있어야 한다. (개정 2019. 11. 15.)

제14조(사후관리)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훈령 제368호, 2019. 11. 15.)

(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훈령 일괄개정훈령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